**9주차)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이해**

Q. ( )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Q. 영업비밀은 혁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Q. 영업비밀은 속성상 속지주의를 벗어난다?

Q. 영업비밀의 요건으로는 ( ), ( ), ( )이 있다.

Q.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된다?

Q,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엄격하게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역설계를 통해 영업비밀을 알아냈다면, 그 영업비밀은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Q.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된 정보라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Q. 실패한 데이터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Q. ( )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Q. 종교상의 교의를 담은 문서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다?

Q. 반사회적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A. 영업비밀

A. O

A. O

A.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비밀유지성)

A. O

A. X, 회사에서는 비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역분석으로 기술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본다.

A. O

A. O

A. 경제적 유용성

A. X, 경제적 가치가 없다.

A. X,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

Q. ( )은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Q.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는 상대적이다?

Q.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판단할 때의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다?

Q.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하는 한 기간의 제한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나 경영정보 및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Q. 영업비밀은 일종의 기업비밀이다?

Q.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업비밀에 포함된다?

Q. 영업비밀보호법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보호한다?

Q. 영업비밀은 독점·배타적 권리이다?

A. 비밀관리성(비밀유지성)

A. O

A. O

A. O

A. O

A. O

A. O

A. O

A. O

**10주차) 영업비밀과 기술보호**

Q.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Q. 기술적 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영업비밀의 대상에 포함된다?

Q.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비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Q.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스스로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Q. ( )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된다.

Q. 기업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한 영업상 관련 기밀 유출은 ( )에 해당한다.

Q.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공개,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가 가능하다?

Q.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에서의 수익활동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 역분석에 의한 영업비밀의 취득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Q. 영업비밀 침해는 ( ), ( )로 나뉜다.

A. X, 그것을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인정된다.

A. O

A. X,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면 인정된다.

A. O

A. O

A. 배임죄

A. 업무상 배임죄

A. O

A. O, 대학이나 비영리법인도 영업비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A. X

A. 부정취득, 부정공개

Q.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은 취득 자체만으로도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Q. 국정감사나 재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비밀이 알려지게 되었다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예외가 인정되어 영업비밀로 계속 보호가 될 수 있을까?

**11주차) 영업비밀침해의 유형과 대응**

Q. 부정취득행위 후 별도로 사용·공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불법행위가 된다?

Q. 영업비밀을 공개한 상대방이 그 영업비밀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한 공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사후적 관여행위는 사용과 공개행위만이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되며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Q. ( )은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Q. ( )은 근로자로 하여금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Q. 전직금지시간은 영업비밀 존식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Q. ( )은 영업비밀에 특화되어 그 내용의 비공지성을 유지하면서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영업비밀 내용의 공개 없이 영업비밀 존재시점, 보유주체, 원본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A. O

A. X, 이유에 관계없이 공공연히 공개가 되면 예외없이 영업비밀로서 지위를 잃게 된다.

A. O

A. X

A. O

A. 부정공개행위

A. 전직금지청구(경업금지청구)

A. O

A. 원본증명제도

Q. 원본증명제도를 통해 타임스탬프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그것으로 해당 전자문서가 영업비밀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Q.

A. O, 등록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